

### 3. 출제 방향

#### 가. 출제 방향 개요

- 문제은행(기출문항 포함) 출제방식을 학교급별로 차등 적용함.
  - 초졸 : 50% 내외
  - 중졸 : 30% 내외
  - 고졸 :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대체로 기본 지식 중심으로 출제하되, 기출문항의 유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함.
- 출제 난이도
  -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을 고려하여 적정 난이도 유지.

#### 나. 출제 범위

- 초·중·고졸검정고시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함.
-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목의 출제 범위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

- 초·중졸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초졸 시험의 경우, 기출문제 영역 포함 50% 내외로 출제가 가능하고 중졸 검정고시의 경우, 30% 내외로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중졸검정고시 '사회' 과목의 경우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 고졸검정고시 '과학'의 경우 기본지식 및 융합형 유형의 문제를 고르게 출제  
-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대체로 기본지식 중심으로 출제하되, 기출문항의 유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
- 고졸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과목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졸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범위 과목 및 대상 교과서는 다음과 같음.

구분	교과	출제 범위	대상 교과서
필수	국어	국어 I	교육부 검정(2013. 08. 30)
		국어 II	교육부 검정(2013. 08. 30)
	수학	수학 I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정(2013. 08. 30) 경기도교육감 인정(2013. 09. 04)
		수학 II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정(2013. 08. 30) 경기도교육감 인정(2013. 09. 04)
	영어	실용영어 I	경기도교육감 인정(2012. 09. 28)
	사회	사회	교육부 검정(2013. 08. 30)
	과학	과학	서울특별시교육감 인정(2011. 01. 14)
한국사	한국사	교육부 검정(2013. 08. 30)	
선택	도덕	생활과 윤리	교육부 검정(2013. 08. 30)
	기술·가정	기술·가정	충청북도교육감 인정(2013. 08. 30)
	체육	운동과 건강 생활	울산광역시교육감 인정(2013. 08. 30)
	음악	음악과 생활	부산광역시교육감 인정(2013. 08. 30) 경기도교육감 인정(2013. 09. 04)
	미술	미술문화	대전광역시교육감 인정(2013. 08. 30)

- 중졸 검정고시는 교과별 과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고졸 검정고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서 교과별로 과목이 구분되어 있음.
- 향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모든 학교급에 적용될 경우 출제범위는 변경 예정

#### 다. 출제 수준

- 출제 수준은 각 해당 학교 졸업(초졸·중졸·고졸)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임.

## 4. 응시 과목 면제

### 가. 관련 법령에 따른 면제

구분	해당자	응시 과목	비고
초졸	1)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과목】 • 국어 • 수학	국·수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중졸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92.9.3 이전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국·수·영 이외 3과목 면제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고졸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3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국·수·영 이외 4과목 면제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2과목】 • 국어 • 수학 또는 영어	국, 수 또는 영 이외 5과목 면제
	3)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1과목】 • 수학 또는 영어	수 또는 영 이외 6과목 면제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2014년 이전(2014년 포함) 고졸 검정고시 선택(II) 과목 합격자의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선택(II) 과목 합격 점수를 금회 고졸 검정고시 점수에 합산을 원할 시 선택(II)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고시합격을 결정함. 단,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신청란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나. 평생학습계좌제 과목 이수에 따른 면제

-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어, 영어(단, 초등 영어는 가능), 수학을 제외한 응시과목에 대하여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과목별로 90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 평생학습계좌제 연계 면제 과목

구분	과목 수		검정고시 응시 과목	계좌제 연계 면제 과목
초졸	6과목	필수	국어, 사회, 수학, 과학(4과목)	국어·수학을 제외한 기타 시험 과목
		선택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2과목)	
중졸	6과목	필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5과목)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기타 시험 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1과목)	
고졸	7과목	필수	국어, 사회, 한국사, 수학, 과학, 영어(6과목)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기타 시험 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1과목)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 (https://www.all.go.kr)

• 검정고시 과목 면제 신청하기

〈그림 4. 검정고시 과목 면제 신청하기〉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 (https://www.all.go.kr)

5. 응시자 시험 당일 준비사항

가. 준비물

- 초졸: 수험표, 신분증, 흑색볼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수정테이프]
- 중졸 및 고졸: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점심도시락]

나. 수험표, 주민등록증 분실자 준비 사항

- 수험표 분실자: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 시험 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기 바람.
- 주민등록증 분실자: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지참하기 바람.

다. 기타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15~20일 소요).
- 시험당일 시험장 운동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람.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구비 서류 미비

-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나. 시험중 퇴실 금지

- 수험자는 시험 중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음.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실할 수 있으나, 퇴실 후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소지 물품(문제지 포함) 없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함.
- 퇴실 시에는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나 물품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 종료 시까지 대기하여야 함.
- 퇴실 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전자 담배 등 무선통신 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 시험장 내에는 수험생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할 수 없음.

다. 부정행위

-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고시를 정지하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  
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라. 기타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수험  
생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교육청별 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 과목합격자는 별도 대기실에서 대기함
- 검정고시 응시자가 퇴학자일 경우 퇴학자는 응시일로부터 대략 8개월 이전에 학교를 그만둔 상태여야 함
- 교육기관 입학상담 시 최종학력증명서 확인 후 교육 실시
  - 학적 정정 신청: 출신 학교에서 증명, 통·폐합된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문의·발급